# 2025년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업의 혁신역량 및 성장성이 우수한 여성기업을 선정하고 분야별 맞춤형 지원으로 도내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5년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5년 3월 5일 경기도지사

## 1. 공고 개요

- O 공고 및 접수기간: 2025. 3. 5.(수) ~ 3. 20(목) 17:00 限
- O 신청대상 : 경기도 소재 업력 만 3년 이상의 여성기업
- O 신청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 <u>경기도 소재</u>(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사업공고일 현재 <u>업력 만 3년 이상</u>(2022년 3월 4일 이전 사업자등록)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u>여성기업확인서 보유</u>기업(유효기간 내)
- ※ 사업 공고문 및 사업 운영지침 등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신청기업)에 있음
- < 창업일 기준 >

- < 소재지 기준>
-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 ▶ (본사)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본점소재지
-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 (공장) 공장등록증명서상 공장소재지
- O 선정목표 : 총 54개사
- O 추진절차

#### 1 4 (5) $(2)^{(3)}$ 정량평가 및 법위반 조회 선정기업 지원 공고·접수 최종 선정심의 전문가 발표평가 요건검토 및 서류(정량)평가 기업별 맞춤형 사업공고 및 ⇒ 1.5배수 선발 및 11개 법률 및 최종심의 신청·접수 지원 위반기업 조회 ⇒ 54개사 선정

## 2. 지원 내용

- O 과제추진 기간 : 선정일 ~ 10월(금년도 기간 내 추진 가능한 과제로 신청)
- O 지원금액 : 총 사업비용의 80%, 지원금 최대 800만원 이내(부가세 제외)
- 최종 심사·평가 후 고득점 순 최상위 5개사는 총 사업비용의 80%, 지원금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부가세 제외)
- 단, 최초 본 사업 신청 및 지원 신청서 작성 시 총 사업비용의 80%, 지원금 최대 800만원 이내(부가세 제외) 기준으로 작성 요망
- O 지원내용 : 마케팅 및 사업화 분야
- 최대 지원금 한도 내 기업이 자유롭게 마케팅 및 사업화 분야에 복수 과제 선택·신청 가능

분야	과제구분	세부과제	지원금 한도
	ゥ H フΙΗLコ ネ	홈페이지·카탈로그·홍보동영상	800만원
	홍보기반구축	제품사진 촬영·상세페이지 제작	200만원
마케팅	온라인마케팅	SNS·온라인 마케팅	800만원
분야	전시박람회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800만원
	컨설팅	마케팅 관련 전문가 컨설팅	300만원
	교육 지원	4차 산업 대응 등 마케팅 교육	300만원
	제품설계	기구설계·금형설계	800만원
	제품생산	워킹목업·금형제작·간이생산	800만원
	디자인상품화	제품·포장·시각디자인	800만원
사업화 분야	(해외)특허권리화(출원)	특허·상표·디자인·PCT	800만원
۱ ت	국내·외규격인증	국내·외 규격인증 지원	800만원
	컨설팅	사업화 관련 전문가 컨설팅	300만원
	교육 지원	기술 트렌드 등 사업화 교육	300만원

### O 지원절차(최종 선정 이후)

1		2		3		4		(5)
소요 비용 적정성	$\Rightarrow$	과제 승인	$\Rightarrow$	개별기업	$\Rightarrow$	기업 선지출	$\Rightarrow$	검토 후
최종 검토		및 지원금 결정		과제수행		및 완료 보고제출		지원금 지급
(GBSA)		(GBSA)		(선정기업)		(선정기업)		(GBSA)
3~4월		4월		4월 ~ 완료시		완료시 ~ 10월 말		수시 ~ 11월말

※ 금형제작 지원 : 승인 전 원가분석 의뢰(전문기관), 완료 시 현장실사 후 지원금 지급

- O 선정기업 혜택(무료홍보 지원)
- 대상 : 선정 기업 중 홍보 희망기업 35개사
- 기간 : 선정시점 부터 ~ 12월 중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내용 : 전문매체를 활용한 기업 및 우수제품 홍보.광고 지원 ※ 기업 부담금 없음. 무료 진행
- 매체 : 언론기관을 통한 기획기사, 일간지, 월간지, 웹/모바일 배너 광고
- 절차 : 선정기업 매체 수요 조사 → 홍보 컨텐츠 수집(필요시 인터뷰) → 광고물 작정 및 편집(언론기관) → 매체 홍보·송출
- O 기타 지원금(선금) 신청
- 내용 : 선금 신청기업에 한하여 선급금을 지급하고 과제 추진 후 정산 가능
- 절차 : 지원금 선금 지급 신청서(지정양식)와 선급금 이행보증증권 등 필수 서류제출 시 서류 검토 후 선금 지급

## 3. 선정평가

- O 서류(요건)검토
- 검토내용 : 사업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서 접수가 완료된 기업 중 기본 자격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평가 제외 사항
  - ※ 반드시 사업 접수 기간 내 필수서류 제출 요망
  - . 여성기업 확인서 등 필수서류 미제출 기업
  - . 지원 제외 업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 과거 3년 이내 동일 사업(우수여성, 여성기업 맞춤형, 여성기업 마케팅) 수혜기업
  - . 해당 외 본 공고문 및 사업운영지침상의 지원 제외, 취소 대상 기업
- O 1차 서류(정량)평가
- 평가대상 : 서류검토 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접수) 기업
- 평가방식 : 제출서류 통한 정량평가로 총점 100점 만점 기준 고득점 순 2차 최종 심사위원회 상정
- 선정규모 : 최종 선정기업 규모의 1.5배수 내외 선정

- 평가내용 : 경영안정성 및 고용 기여도, 기술 역량 등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기술역량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 최근 3년 내 기술개발과제 참여 실적 보유 . 특허.규격인증, 기술관련 수상실적	20점
경영안정성	. 전년도 매출증가율 . 전전년도 매출 증가율 . 매출액 영업이익률 . 부채비율	45점
고용기여도	. 전년도 상시고용인원 증가율 . 전전년도 상시고용인원 증가율	20점
가산점	. 기술혁신형(이노비즈), 경영혁신형(메인비즈)인증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등 경기도 우수인증기업 . 고용창출100대우수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 산업단지RE100 참여기업, ESG진단평가 우수기업 . 직전년도 매출액710억원 이하 기업 . 주 4.5일제 추진기업	15점
	점수 합계	100점

#### O 법위반 사실 조회

- 시행근거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 실시방법 : 제출서류 검토, 고시명단 조회, 관련 부처 협조 요청 등

- 조회내용 : 사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관련법률 위반 사실 조회

- 적용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등 관련 조례에 제시된 11개 법률의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 이력 확인

- 결과활용 : 최종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선정 심의에 반영. 법위반

사실 확인 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 고발 건은 최종 확정판결 확인 시 제한 기준 적용

-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2025.1.17.)및 경기도 기업 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에 따라 해당 법률 분야 조사 및 심의 진행(경기도고시 제2025-23호)
- (공정) 1 공정거래법, 2 하도급법, 3 표시광고법
- (노동) 4 근로기준법, 5 산업안전보건법
- (환경) 6 폐기물관리법, 7 대기환경보전법, 8 소음진동관리법, 9 물환경보전법
- (납세) 🕦 국세기본법, 🕦 지방세기본법

O 2차 최종 심사.평가 위원회

- 심의대상 : 1차 서류평가 통과 기업

- 선정규모 : 최종 54개사 결정(우수 선정기업 5개사, 일반 선정기업 49개사)

- 위원구성 : 외부 전문가 5명 내외

- 평가내용 : 계획 적성성, 기업역량, 사업성, 기대효과 등 정성평가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토대로 한 기업역량 등 기업별 발표평가(PT) 방식 진행

구분	평가기준				
	· 계획적정성(30점)	-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명확성, 지원 필요성 등			
	· 기업역량(30점)	- 대표자 리더십 및 기업혁신 노력, 아이템(서비스 등)의 차별성 등			
정성평가 (100점)	· 사업성(20점)	-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준비도 및 대응방안 등			
	· 기대효과(10점)	- 매출 성과 및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효과 등			
	· 정량평가(10점)	- 1차 서류평가(100점) 환산 점수 적용			

- 선정기준 : 법위반 기업 조회 결과 내용 반영한 최종 위원회 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기업을 대상, 고득점 순 선정
  - . 심의위원 최대 및 최소 점수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의 고득점 순 선정

(지역 균형발전 및 더 고른 기회 제공 위한 남.북부 지역 쿼터제 적용하여 진행)

- . 최종 점수 최상위 5개사 우수 여성기업으로 선별. 지원금 차등 혜택 부여
- 예비기업 선정 : 최종 심사.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선정기업으로 결정되지 않고 평가점수 60점 이상 득점한 기업을 예비 선정기업으로 결정할 수 있음

## 4. 제출서류 및 작성서식

- O 대표자의 직인(또는 서명)이 필요한 제출서류에 직인(또는 서명)이 누락 되었을 시 해당 서류는 불인정 됨
- O 필수서류 미제출시 1차 서류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택 제출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 점수(기술역량 및 가점) 미부여
- O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되며,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는 최근 3년 내 발급 분을 인정

구분	제출 서류 목록	발급처
필수제출 (과제확인)	① 【제1호 서식】: 지원 신청서 ② 【제1-1호 서식】: 신청기업 소개서 ③ 【제1-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④ 【제1-3호 서식】: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여부 확약서	경기기업비서 사이트 사업공고문 첨부파일 확인 (www.egbiz.or.kr)
필수제출 (조건확인)	④ 국세 완납증명서 1부,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인정 유효기간 내 증명서로 제출 ⑤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공장등록증명(경기도 소재 여부 확인) → 제출 시 발급일자는 공고기간 내 문서로 제출	국세청 홈텍스/정부24 www.hometax.go.kr www.gov.kr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www.femis.go.kr
	⑥ 여성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인정 유효기간 내 발급분 제출	공공구매종합정보 www.smpp.go.kr
필수제출 (평가서류)	① 재무제표 제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포함 전본 - 2022년도 재무제표 1부 - 2023년도 재무제표 1부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매출과세표준 부분 확인) - 2023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 2024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2월 귀속분) 제출 - 2022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2월 귀속분) 1부 - 2023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2월 귀속분) 1부	국세청홈텍스 www.hometax.go.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해당시 제출 (평가서류) ※ 제출여부 기업선택	- 2024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2월 귀속분) 1부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 연구개발과제 협약서 또는 승인 공문(인정기간 최근 3년 이내)  · 국내·외 특허출원서, 기술 인증서(해당 시 각 인정 유효기간 내)  · 기술관련 표창, 상장(인정기간 최근 3년 이내)  → 표창 및 상장 제출기준 : 도지사 이상급 표창 또는 상장만 인정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www.rnd.or.kr 특허청, 인증기관, 주관기관
해당시 제출 (평가서류) ※ 제출여부 기업선택	·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인증서 ·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인증서 · 경기도 우수기업 인증서(유효기간 내 경기도 지사명의 인증만 해당됨)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 · ESG진단평가 우수기업 · 직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기업 · 주 4.5일제 추진 기업	각 발급처

## 5. 신청방법: 이지비즈 온라인 접수

O 신청기간: 2025. 3. 5.(수) ~ 3. 20(목) 17:00 까지

O 사업신청 :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O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 신청은 온라인(www.egbiz.or.kr) 신청 및 접수만 가능. 별도 이메일 통한 제출 불인정
- 신청 마감 시점에는 접속자 수가 많아 시스템이 불안정 할 수 있음. 신청에 여유가 있도록 마감 종료일 이전에 최종 접수 완료 요망.
- 온라인 신청 중 접수 마감 종료시간에 따른 차단 등으로 인해 최종 신청(접수) 미완료의 경우 신청자(신청기업) 책임임
- 대행사(외주용역사) 또는 기타 외부 전문업체의 서류 대리 작성·신청은 불가하며, 신청기업이 지원 요건 등 직접 확인 없이 단순히 대행사(외주용역사) 또는 기타 외부 전문업체의 추천 등으로 사업을 접수했을 시 이에 따른 정보오기입 및 지원 제외 대상자 여부, 제출 서류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신청기업) 책임임

### O 제출 서류는 하나의 PDF 파일로 만들어 파일 업로드 요망

- 파일 1개당 업로드시 최대용량이 제한되어(약 10MB 이내) 있으므로 용량이 클 경우 여러 개의 PDF 파일로 나누어 업로드 요망.
- 대용량으로 인한 압축파일(zip) 형태로 업로드 시 오류발생 될 수 있음

## 6. 신청 제외, 선정·지원 취소 및 제재조치

- O 신청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
-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지원사업으로 동 사업과 동일한 과제를 이미 신청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중인 기업
- 최근 3년 내 동일 지원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거나 중도 포기한 기업

## . 동일사업 : 「우수 여성기업 선정 및 홍보」,「여성기업 맞춤형 지원」「여성기 업 마케팅 지원」

- 그 외 본 사업운영지침 사항 적용함

#### O 지원결정 취소

- 주관기관장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결정을 취소 하고, 추후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사업장 휴·폐업, 경기도 외 이전, 여성기업 자격 상실 등 신청 및 지원 자격 요건을 불충족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지침을 위반한 경우
- 지원 결정 후 타 지원사업 참여를 위하여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
- 허위로 과제를 추진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승인된 동일 과제를 타 기관에서 지원받았을 경우
- 추진기간 중 지원 제외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과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 그 외 본 사업운영지침 사항 적용함

### O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 및 환수 조치

- 주관기관은 선정기업의 과제추진 중도포기, 과제 중단, 제출한 서류의 허위 판명, 타 기관 중복수혜, 완료점검 결과 지원 불인정 등으로 지원결정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와 지원금 환수에 대해 결정한다.
- 선정기업의 중도 포기, 과제 중단/미완료 등으로 지원이 취소가 되는 경우는 지원결정 취소 외에 다른 제재 사항은 없다.(선급금이 기 지급된 경우는 지급된 지원금 환수 조치)
- 단, 허위서류 제출, 타 기관 중복수혜 등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의「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재한다.
  -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 그 외 본 사업운영지침 사항 적용함

## 6. 문의처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비고
사업 담당자	기업성장팀	정기호 대리	031-259-6493	여성기업 지원사업 문의
온라인 시스템 담당	-	전산 담당자	031-259-6299	온라인 시스템 문의

## ※ 기타 사업 관련 유의사항은 첨부 문서인 사업운영 지침 참고 요망

## 7. 붙임서류

(붙임1) 사업 공고문 1부.

(붙임2) 사업운영지침 및 신청서식(서식 제1호, 제1-1호 ~ 제1-3호) 각 1부

# 별첨 1 신청제외 업종

	산업분류코드	
업종 분류	(KSIC-11)	신청제외 업종
-11 61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제조업	33409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건설업	41 ~ 42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 (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승강설비 설치 공사업 (42203),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4), 소방시설 공사업 (42205),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47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매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859 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93 中	다단계 방문판매
	5621	주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219)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기라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정보통신업	58 中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7111 11-11 - 41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정보서비스업	63999 中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 ~ 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 (KSIC-11)	신청제외 업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7) (2) (3) (1)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995 中	온라인을 통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7171-1	75999 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임대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 0 2 h 2 0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교육서비스업	855~856 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역가전한 시미스탑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96111)	이용업
	(96112)	두발미용업
	(96113)	피부미용업
	(96119)	기타미용업
	(96121)	욕탕업
	(96122)	마사지업
공공, 수리 및	(96129)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기타 개인	(96912)	가정용세탁업
서비스업	(96913)	세탁물공급업
	(96921)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96922)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96991)	예식장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96993)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96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97 <sup>~</sup> 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 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지원 제외

## 별첨 2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기준고시

#### 경기도 고시 제2025-23호

####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도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기업선정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5. 1. 17. 경 기 도 지 사

- 1. 추진목적 : 기업의 법 준수 문화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기업 간 공정한 경쟁과 기업 성장 경영문화 전환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2. 적용대상 : 경기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 - (도내 기업) 등기부등록상 주 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
- 3. 적용사업 : 道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적용하되. 아래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 적용 제외
  - 가. 제외사업은 향후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에 따라 제한기준 적용 대상사업으로 전화될 수 있음 나. 사업유형별 적용제외 · 유예사업
    - 1) (계도 · 개선사업) 법령준수를 위한 계도와 개선 목적의 사업
    - 2) (사업운영비·소액사업) 예산용도가 사업운영비 한정, 소액·다수기업 지원사업
    - 3) (비경쟁사업) 기업수요가 비상시적이고 기업 필요성에 따라 순차 지원 사업
    - 4) (자금·융자지원 사업) 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사업으로 수익자가 부담
    - 5) (시·군 매칭(보조) 사업) 도비 보조 또는 매칭비율에 따라 시군 지원사업
    - 6) (소상공인 지원목적 사업) 소상공인 지원 및 목적 용도의 사업
    - 7) (투자유치 지원) 경기도 투자유치에 따른 지원(인센티브) 사업
- 4. 위반사실 적용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 가. 적용법률
    - 1) (공정) 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
    - 2) (노동) 4 근로기준법 5 산업안전보건법
    - 3) (환경) 🔞 폐기물관리법 🗗 대기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관리법 ᠑ 물환경보전법
    - 4) (납세) 🛈 국세기본법 🏻 11 지방세기본법
  - 나. 위반 사실 적용 법률은 사업 부서별·사업 특성에 따라 지침·기본계획상 추가 운영 가능
- 5. 위반사실 조회기간 : 사업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 가.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 나.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 고발건은 확정 판결 확인 시 제한기준 적용
- 6. 사업참여 제한조건 : 법 위반 사실 확인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가.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 시[법위반사실여부 확약서(서식2)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 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나.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 부서별(사업별) 법 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 7. 법위반사실 확인 : 사업 부서에서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
  - 가.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처분내역 조회
  - 나. (노동)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조회
  - 다. (환경) 기업 소재지 관할 시·군 조회
  - 라. (납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확인
- 8. 이의 및 구제신청 : 법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이내 대상자는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 및 구제신청서(서식3) 제출

가. 사업자선정위원회 등(실국 또는 수탁기관)에서는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이의 및 구제 신청서 검토 후(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 사업자 선정전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 ※ 기업의 권리구제,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 기한 연장 가능 나. 삭제 9.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서식1), 기업의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서식2) 10. 고시 효력일 : 고시일 ~ 차기 고시일 전까지 11. 문의처 :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 031-8030-2992, -2995) 붙임 1. (서식1)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2. (서식2)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3. (서식3) 이의 및 구제신청서

(붙임1) [서식1]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ol> <li>개인 및 기업 수집 정5</li> </ol>	1		
기 업 ( 단 체 ) 명		사 업 자 등 록 번	ъ
소 재 지		7 6 7 6 7 6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2. 개인정보 수집 기관 : <sup>-</sup>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		○ (사업수행 기관명)	
개인정보 수집 항목	기업(단체)명, 기업(단체) 재지), 대표자성명, 대표자	,	대지(주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소 인서
개 인 정 보 수 집 및 이 용 목 적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 (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		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 나라 법위반 사실확인
개인정보 보유 및 이 용 기 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sup>-</sup>	기간은 당해연도 사업종료	로시까지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성	용에 동의함 🗆 개인정	<u></u> 보 수집 및 이용에 동	의하지 않음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 공 목 적 기업경영	경활동 중 발생된 법위반사실	확인	
" 0 0 1 7212	네)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제 공 기 관 O (고용 O (환경	讨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하 남노동부, 고용노동부 지방청) 당부, 관할 시군 환경부서) 폐7 4서, 시군) 국세기본법, 지방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  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성	용에 동의함 🗆 개인정	J보 수집 및 이용에 동.	의하지 않음
<ol> <li>기타사항 : 상기 목적</li> </ol>	이외에는 개인정보 이용 !	및 제3자에게 제공 하지	l 않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민정보 보호 원칙), 제15조(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
	2025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00000 귀하

#### (붙임2) [서식2]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 업 ( 단 체 )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지정폐기물허가업체 해당 여부(한강유역환경청) ( □ 해당 □ 비해당)		
법위반 여부 사실 관계 확인사항	위반사실 없 음	위반사실 있 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관할 시군 환경부서, 도 환경부서, 한강유역환경청)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세무서, 시군)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법위반사실 확인)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기준 고시 관련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유의사항 고지 및 안내	동 의	부동의
사업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사실이 없으며 사업자 선정 후 법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 선정 취소 및 사업비 반환에 동의합니다.		
법위반사실에 대해 위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거짓으로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 사업 취소 및 사업비 환수, 3년 이내 도 전체 지원 사업에서 제외됨을 고지 받고 이에 동의합니다.		
공고문 및 신청 유의사항 등 관련내용을 확인 하였으며, 제출한 서류에 7  재, 증빙불가,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법령에 처 <sup>나</sup> 당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	드는 인)
	0000	) 이 귀하

(붙임3)	[서식3]	이의	및	구제	싞	첫	ᄉ

이의 및 구제 신청서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 업 ( 단 체 )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효	<u> </u>			
소 재 지		1	'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2. 신청요지						
관 련 법 령						
법위반 처분내용 ( 처 분 기 관 )						
법위 반사실 개요 (경위 및 사실관계)						
3. 소명내용				_		
4. 증빙서류 : 법위반치	려분서류 및 소명자료(증	빙)				
OOOO사업 사업대 적용에 대하여 위와 7	상자 선정 평가 시 법위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리반 처분사실에 <sup>1</sup>	따른 평가 총점의 20% 감점			
	2025년	월 일				
	신기	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00000 귀하	-		